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51 / 전송 733-9535~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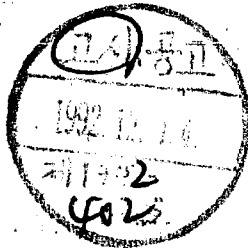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도개30260-330

시행일자 1992. 12. 14.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	시 장			
보존						
도시계획국장	전결	범무담당관				
도시개발과장		개심사			1992.12.11	개심사
택지개발과장		담당자			법제과장	범무담당관
기안	고배규			협조		

제목 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
1. 개총 710-532('92.11.1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대호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제출한 대치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,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와 개발기간 및 시행기간을 변경승인코자 합니다.

다 음

가. 개발계획(변경)

○ 사업시행자

- 기 정 : 서울특별시시장 이 해 원

- 변 경 : 서울특별시시장 이 상 배

○ 개발기간

- 기 정 : (1989.10.23 ~ 1992.12.31

- 변 경 : 1989.10.23 ~ 1993.12.31

나. 실시계획(변경)

○ 사업시행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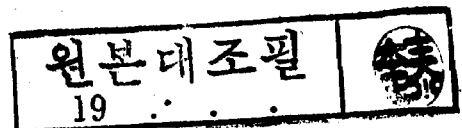
- 기 정 : 서울특별시시장 이 해 원

- 변 경 : 서울특별시시장 이 상 배

○ 시행기간

- 기 정 : 1989.12.16 ~ 1992.12.31

- 변 경 : 1989.12.16 ~ 1993.12.31



다. 연기사유

○ 지구내 도로구간의 지하철 3호선 공사 시행 및 지장물 보상 협의지연
으로 절대공기 부족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도시개발공사 사장

참조 : 개발부장

제목 : 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
1. 개송 710-7500('92.12.1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대호로 제출한 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에
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,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
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와 개발기간 및 시행기간을 변경 승인하니 동 기간내에 받드
시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개발계획(변경)

○ 사업시행자

- 기 정 : 서울특별시청 이 해 원

- 변 경 : 서울특별시청 이 상 배

○ 개발기간

- 기 정 : 1989.10.23 ~ 1992.12.31

- 변 경 : 1989.10.23 ~ 1993.12.31

나. 실시계획(변경)

○ 사업시행자

- 기 정 : 서울특별시청 이 해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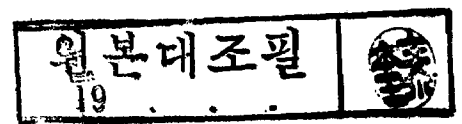
- 변 경 : 서울특별시청 이 상 배

○ 시행기간

- 기 정 : 1989.12.16 ~ 1992.12.31

- 변 경 : 1989.12.16 ~ 1993.12.31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

(제 3 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보 게재 구분 : 고시

나. 관보 게재 건명 : 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
다. 법 규 근 거 :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령
령 제7조 제3항 제8조 제6항

첨부 : 고시문 2 부. 끝.

(제 4 안)

수신 : 강남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목 : 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
우리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
승인신청이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승인하
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첨부 : 변경 승인서 사본 1 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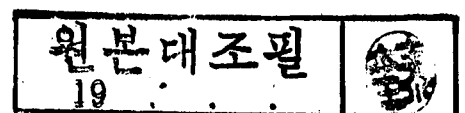
(제 5 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참조 : 택지개발과장

제목 : 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보고

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
제8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보
고 합니다.



가. 개발계획(변경)

○ 사업시행자

- 기 정 : 서울특별시 이 해 원
- 변 경 : 서울특별시 이 상 배

○ 개발기간

- 기 정 : 1989.10.23 ~ 1992.12.31
- 변 경 : 1989.10.23 ~ 1993.12.31

나. 실시계획(변경)

○ 사업시행자


- 기 정 : 서울특별시 이 해 원
- 변 경 : 서울특별시 이 상 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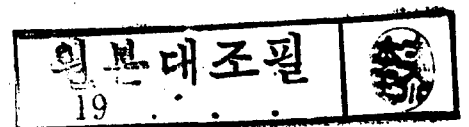
○ 시행기간

- 기 정 : 1989.12.16 ~ 1992.12.31
- 변 경 : 1989.12.16 ~ 1993.12.31

다. 연기사유

○ 지구내 도로구간의 지하철 3호선 공사 시행 및 지장물 보상 협의지연
으로 절대공기 부족. 끝

서  특별시장





1992-
서울특별시 고시 제 402 호

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

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 동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2. 12 . . 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가. 개발계획(변경)

○ 사업시행자

- 기 정 :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
- 변 경 : 서울특별시장 이 상 배

○ 개발기간

- 기 정 : 1989.10.23 ~ 1992.12.31
- 변 경 : 1989.10.23 ~ 1993.12.31

나. 실시계획(변경)

○ 사업시행자

- 기 정 :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
- 변 경 : 서울특별시장 이 상 배

○ 시행기간

- 기 정 : 1989.12.16 ~ 1992.12.31
- 변 경 : 1989.12.16 ~ 1993.12.31. 끝.

